

이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직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(안) 검토보고서

1. 제안이유

지방행정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개정공포된 의회관련 기구, 정원 조례, 규칙중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통합 조례를 표준모델로하여 조문내용을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가. 조례 제명을 “이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”로 변경함.
- 나. 사무국장의 직급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며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으로 별도로 규정함.
- 다. 전문위원의 직급별 정원을 삭제하며 전문위원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함.

3. 검토의견

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통합조례 표준모델(안)에 의거 일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전문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